

의안 번호	260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 출 일 자 : 2026. 8. 21.(금)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21.(금)
-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9. 3.(목)

2. 제안이유

-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종갓집 환경지킴이단”란 각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적·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
- 환경지킴이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역 실정에 밝고 환경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20명 내외로 구성
- 환경지킴이단의 활동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6조)
 - 지역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견 제언,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순찰,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등
- 협의회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제9조)
 -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 단장으로 구성
- 예산지원 및 운영규정,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제12조)
 - 사업 수행,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7조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환경지킴이단 구성에 관한 사항, 환경지킴이단의 활동 및 육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예산 지원 및 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